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범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추가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4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범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추가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4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Ⅲ. 검토의견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범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되는 대상 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 <u>재산</u>	2. ----- ---- <u>재산·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의3¹⁾에서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①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③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²⁾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³⁾

그런데 일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 1)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 6. (생략)
 - 3)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 ③ ~ ④ (생략)

이에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의 정보는 구직자의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선택이 가능하고, 구직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을 기초심사자료 등에 기재하는 것이 채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9